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주형환

●대통령령 제2754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된 물품을 매도하는 것

제2조제6호 중 “생산(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을 “생산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정한 수출실적을 지원 요건으로 하는 무역과 관련한 금융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무역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가공된 물품 등을 보세판매장에서 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업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래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 이기권

●대통령령 제2754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본문 중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수리”를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45조제2항제4호·제5호·제5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제2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의 수리
6.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한 보험 가입 신청의 수리 및 가입 신청 사실의 통보
7.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의 탈퇴신청의 수리
8.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등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행하고 있어 고용보험 적용 시점과 피보험자격 취득 시점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업무와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의 수행 주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관 김 영 석

●대통령령 제27550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